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투자협회
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

보도	2026.5.22.(금) 13:30	배포	2026.5.22.(금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	책임자	국 장	최상두	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이진태	(02-3145-7620)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	책임자	본부장	정형규	(02-2003-9014)
		담당자	부 장	하영훈	(02-2003-9370)

금융감독원-금융투자협회,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

I. 워크숍 개요

- '26. 5. 22.(금),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「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」을 개최하였음
 - 동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 관계자,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
- 금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의 최근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
 - 금감원은 운용사의 단순·반복 지적사례와 더불어, 최근의 현안인 채무구조도 도입 경과, ETF 운용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
 - 업계에서는 AI활용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사례, 회사내 AI도입시 가이드라인, ETF 관련 광고규제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음

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요

- √ (일 시) '26.5.22.(금) 오후 13:30 ~ 17:00
- √ (장 소) 금융감독원 2층 강당
- √ (참석자)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명

Ⅱ.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

1.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 모두 발언

-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·운영 관련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
 -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광고에도 철저한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하여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줄 것을 당부
 - 아울러, 동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경영진은 물론 회사 전체에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

2. 금융감독원 주요 발표 내용

- ① **(책무구조도 도입·경과)**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소개, 책무구조도 既도입 대형 금투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시범 점검결과 등을 안내하고
 - 운용사를 포함해 중소형 금투업자에 대해 '26.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므로, 실효성있는 책무구조도 운영을 위한 전사적 지원을 당부
- ② **(검사 지적사례)** 펀드 운용시 집합투자규약 위반,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관련 반복적 위반유형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을 전달하고
 -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한 각종 보고의무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노력 요청
- ③ **(ETF운용시 주의사항)** ETF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ETF 운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
 -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LP 및 AP 운영에 있어 운용업계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

3. 업계 주요 발표 내용

- ① **(AI활용 컴플라이언스 효율화)** 투자광고 심의, 운용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 준법감시 업무에 AI 활용사례를 소개하고, 업무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한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화 방안 공유
- ② **(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)**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사의 AI 활용 시 적용 법규와 위험평가·통제 절차 등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
- ③ **(ETF 광고 유의사항)** ETF 시장 확대에 따라 투자자가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, 광고 표시 및 운용실적·수익률 표기 등 투자광고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

Ⅲ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금번 워크숍은 AI, ETF, 책무구조도 등 자산운용업계 주요 현안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로서
 - AI 기반 준법감시 효율화, 책무구조도 안착 및 반복 위반사례 재발 방지 등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며
 -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시 간	진행 순서
13:30 ~ 14:00 (30분)	등록
14:00 ~ 14:06 (6분)	워크숍 개회
14:06 ~ 14:30 (24분)	AI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효율화
14:30 ~ 15:05 (35분)	자산운용사 AI도입 가이드라인
15:05 ~ 15:20 (15분)	ETF 관련 광고규제 및 주의사항
15:20 ~ 15:45 (25분)	휴 식
15:45 ~ 16:10 (25분)	책무구조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
16:10 ~ 16:35 (25분)	자산운용사 단순·반복 검사 지적사례
16:35 ~ 17:00 (25분)	ETF 운용규제 및 내부통제 등 주의사항 * 업무관행 관련 의견 교환의 자리로 별도자료 배포않음

1 | 책무구조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

- 금융감독원은 '25년 하반기에 '25.7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6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
 - ①관리조치 매뉴얼 설계, ②현업 부서의 점검에 대한 임원 승인 절차, ③준법감시부서의 총괄 관리 역할의 적정성 등 3단계로 점검 실시

<점검결과 주요 내용>

- ① 관리조치에 실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, 법령상 문구를 단순 반영하는 등 **점검수행 방법·책임범위가 불명확**
 - 각 사별 **리스크 요인과 발생 주기**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리조치 매뉴얼에 점검 수행 방법·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
- ② 현업 부서의 점검 과정에서 **증빙자료 미첨부 및 점검 누락** 등이 발생함에도 임원이 별도 조치 없이 승인하는 등 **형식적으로 점검**
 - 임원이 현업 부서의 점검 결과에 의견을 개진하고 **중요 항목**은 직접 개별 점검하는 등 **이행 점검의 실효성**을 제고할 필요
- ③ 현업 부서의 매뉴얼 임의 변경을 인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, **점검 일정만 안내**하는 등 **준법감시부서의 총괄 관리 기능**이 미흡
 - 현업부서는 **준법감시부서 승인**하에 관리조치 매뉴얼의 점검 항목을 변경하고, 준법감시부서는 **현업부서의 점검 현황**을 상시 관리할 필요

- **1,007개 금융투자업자**(자산 5조원 미만, 운용재산 20조원 미만)는 금감원에 '26.7.2.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함
 - 금감원은 그간 보도자료 배포,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안 마련 및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적극 지원
 - 미제출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제출기한內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유념하여 주기를 당부

2

자산운용사 주요 지적사례

①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펀드 운용

- ○ 운용은 집합투자규약상 미명시된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

【자본시장법§85.8】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 또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 금지

② 경영·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

- ● 운용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·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대가를 수취하였으나 부수업무 보고의무 미이행

【자본시장법§40,41】 경영·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 영위 시작전 2주 내에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에 보고 필요

③ 의결권 행사·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

- ◇ ◇ 운용은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였으나 행사내용·사유를 미공시

【자본시장법§87⑧】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상장 법인 등 주식의 의결권 행사·미행사 내용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함

④ 준법감시인 미선임, 겸직금지 위반

- ◆ ◆ 운용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(이하 '준감인')을 미선임하였음

【지배구조법§25①】 내부통제 관련 업무 총괄(준감인)을 1명 이상 두어야 함

- ◆ ◆ 운용 준감인은 펀드자산 가치평가, 운용지시서 작성 등 운용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

【지배구조법§29】 준감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, 본질적 업무 등 담당 금지

⑤ 준법감시인·위험관리책임자 성과급 지급기준 미마련

- □ 운용은 준감인·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 성과급 지급·평가기준을 미마련하고 전 임직원 대상 매년 회사 이익의 특정 비율로 성과급 지급

【지배구조법§25⑥,28②】 준감인·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 재무적 경영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지급·평가기준을 마련·운영 필요